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0368     |
| 의 퇴 인 | 구자근 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4. 8. 7. |
| 추계번호  | 24A0735     |

#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제26조(노후거점산업단지 발전기금의 설치 등) | <p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거점산업단지<sup>1)</sup>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 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</p> <p>－ (주요 재원) 정부 출연금,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</p> <p>－ (주요 용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노후거점산업단지 개발사업 자금 지원</li> <li>· 경쟁력강화<sup>2)</sup> 전략계획 수립 등 자금 지원</li> <li>· 노후거점산업단지 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비 지원</li> <li>· 경쟁력강화사업<sup>3)</sup> 지원</li> <li>· 노후거점산업단지개발사업및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</li> </ul> <p>－ (관리·운용)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·운용하되, 그 사무의 일부를 위원회<sup>4)</sup>에 위탁 가능</p> | 의무규정 |

1)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후거점산업단지”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.

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

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

2)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경쟁력강화”란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,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,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·보수·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.

3)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(이하 “경쟁력강화사업”이라 한다)”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(세목 생략)

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,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(세목 생략)

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(세목 생략)

라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·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(세목 생략)

마.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4)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

제5조(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#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제26조(노후거점산업단지 발전기금의 설치 등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)을 신설하는 내용
  -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지 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, 이를 위한 특별회계나 기금 등 별도 재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
  - 이에 개정안은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, 산업집적 및 인력양성,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
-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신설될 경우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노후거점산업단지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
  - 기금이 신설되는 경우 현행법을 근거로 실시되는 일반회계 사업 등이 기금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른 회계 변경은 재정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정수반요인이 아님

\* [참고자료] 현행법을 근거로 실시 중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관련 사업 현황(2024년)

- 다만, 기금 신설에 따라 사업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해당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에 따른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 - 참고로, 2023.1.1. 신설된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사례를 보면 2023년도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9조 7,427억원 중 기존 사업 이관분 등을 제외한 2,335억원(2.4%)이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에 해당하였음<sup>1)</sup>
    - － 다만,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규모는 해당 회계의 용도와 각 분야의 사업 확대 필요성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준용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
- 이에 기금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 9조 7,427억원에서, ①다른 회계로 추진되던 기존 사업 중 해당 특별회계로 이관된 금액 8조 227억원과 ②종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배분되던 교육세 전입액 1조 5,199억원을 빼고, 이상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분(2,001억원)에 신규·확대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(334억원)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임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추계세제총괄과 | 김효진 | 권아영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 |
| 김효진 | 02-6788-4654 | hjkim1991@assembly.go.kr |

[참고자료] 현행법을 근거로 실시 중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연번 | 세부사업명(코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산      |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    | 2024    |
| 1  | 산업단지환경조성<br>(3333-305)                | ·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,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후산단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8,718 | 397,197 |
| 2  | 탄소중립형<br>산업단지환경조성<br>(6131-303)       | ·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및 수출경쟁력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1,400  | 109,500 |
| 3  | ESG형산단공동혁신<br>지원사업(R&D)<br>(3362-304) | · 산단 내 중소·중견기업(5개사 이상), 수요기업, 대학 또는 연구기관, 사업화 전문회사 등 최소 9개기관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대해 ESG 전략수립, 연구개발, 실증 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987   | 527     |
| 4  | 산업집적지경쟁력<br>강화사업<br>(3362-308)        | · 산업단지 내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및 연구소 등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, 회원간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비즈니스 및 공동사업화 등 성과 창출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공동R&BD 과제 지원 | 63,065  | 17,124  |
| 5  | 산학융합지구조성<br>(3362-301)                | ·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집적하여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, 산업 현장에서 'R&D-인력양성-취업'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,244   | 13,244  |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